

# 사이버안보연구소 규정

제정 2017. 3. 6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사이버안보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연구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,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의 입법·사법·행정의 교육·연구·개발 등을 수행하여 국가사이버안보를 강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안에 둔다.

**제4조(사업내용)** 본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·법·교육·연구·개발 등
- ② 국가 사이버안보 전문가 인력 양성
- ③ 산학협력을 통한 국가 사이버안보산업 육성
- ④ 국내·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·학술·협업·정보공유·국제표준화·연구개발 등 활동
- ⑤ 개발한 기술의 패키지·상품화·지적재산권 등
- ⑥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부대사업

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**제5조(구성)** ① 연구소 임원구성은 소장 및 전문위원과 각부에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 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

④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,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
⑤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⑥ 연구소에는 전문위원, 수석연구원, 책임연구원,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박사후연구원(Post-Doc)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기술원 및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⑦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‘연구원 임용규정’에 따른다.

**제6조(조직)**

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, 전문위원, 교육부, 연구부, 개발부, 대외협력부 등을 둘 수 있다.

② 교육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연구부는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를 담당한다.

④ 개발부는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담당한다.

⑤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를 담당한다.

⑥ 대외협력부는 산학협력사업과 대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, 공동연구, 인적교류를 담당한다.

**제7조(감사)**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매년 2월 말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a. 연구소의 당해 연도 예·결산
- b. 연구소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
- c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 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#### 제9조(구성 및 회의)

-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소장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4 장 재 정

**제10조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본교의 지원금,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,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12조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**제13조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①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- ②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- ③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 1월말까지
- ④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### 제 5 장 보 칙

**제14조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5조(운영세칙)**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대학의‘규정 등 관리 운영규정’의 절차에 따라 정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